|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 | | | |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 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20년 3월 26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0년 4월 7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br>[10조좌(1좌는 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 개시(2018년 6월 7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는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20.03.26)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펀드코드: CA147]

|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모기지 관련 증권과 기타 자산담보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모기지 관련 증권과 기타 자산담보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FCP I – 모기지 인컴 포트폴리오(AB FCP I – Mortgage Income Portfolio)'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 분류 |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7%이내 | 0.395 | 0.20 | 2.28 | 110 | 152 | 196 | 292 | 57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0.795 | 0.60 | 1.73 | 81 | 316 | 552 | 1,034 | 2,467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35%이내 | 0.295 | 0.10 | 1.09 | 65 | 96 | 129 | 199 | 40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없음 | 0.495 | 0.30 | 1.27 | 51 | 104 | 160 | 280 | 638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 클래스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2019.03.27~2020.03.26 | 최근 2년 2018.03.27~2020.03.26 | 최근 3년 2017.03.27~2020.03.26 | 최근 5년 2015.03.27~2020.03.26 | 설정일 이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8.06.14 | -12.40 | | | | -6.41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8.06.14 | -12.23 | | | | -6.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18.06.19 | -12.93 | | | | -7.0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8.06.19 | -12.49 | | | | -6.55 |
| 비교지수 | - | 1.53 | | | | 0.85 |
| 수익률 변동성 | 2018.07.05 | 11.13 | | | | 8.45 |

주1) 비교지수: 3M LIBOR (USD)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부동산형, 단위: %) | | | | 운용 경력 년수 |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 김진이 | 1982 | 팀장 | 21 개 | 6,385 억원 | -11.74 | - | -11.74 | - | 2 년 5 개월 |
| 부책임 | 백희범 | 1970 | 팀장 | 19 개 | 14,550 억원 | -11.74 | - | -11.74 | - | 8년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환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 70±30% 수준)<br>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

| | | |
|---|---|---|
| | |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집중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이 특정 업종이나 섹터에 집중되어 해당 업종 또는 섹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신용 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하이일드 채권 투자 위험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보다 높은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 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황의 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자산가치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본 투자신탁에서 편입 예정인 하위 집합투자 기구는 투자 및 헤지 목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신용디폴트스왑("CDS"), 선도거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투자과정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관리 회사 및 관리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일부를 현금 및 현금성 상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파생 상품 (스왑, 선도거래, CDS 등)의 경우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장내 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방법 |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방법 |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br>·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br>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
| 전환절차 | 해당사항 없음 | |

<table>
<tr><td>및 방법</td><td colspan="4"></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 colspan="2">별도로 정해진 총좌수 없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0년 4월 7일</td><td>존속기간</td><td colspan="2">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 (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td></tr>
<tr><td>수수료후취</td><td>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 (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5">기타</td><td>무권유 저비용(G)</td><td>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 (P)</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 (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기관(F)</td><td>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랩(W)</td><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0
3. 모집예정금액 ..... 10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 11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2
4. 집합투자업자 ..... 1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3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4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7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9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2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28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3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 37
1. 재무정보 ..... 3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4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44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44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 46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6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7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7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47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49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49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51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52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5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55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 55
[붙임] 용어풀이 ..... 56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 CA147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CA148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CA15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CA15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CA15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CA1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CA15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CA15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CA15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CA15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CA158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CA15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CA160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CA16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CA162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2) 운용자산별 종류 부동산(재간접형)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5)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1좌는1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로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2018년 6월 7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 CA147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CA148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CA15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CA15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CA15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CA15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CA15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CA15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CA15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CA15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CA158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CA15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CA160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CA16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CA162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8.06.14 | 최초 설정 |
| 2019.08.22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
| 2019.11.06 |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br>-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반영<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 2020.04.07 | - 선취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인하<br>- 고유자산투자기간 연장<br>-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br>-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b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br>(대표전화: 02-789-0300) |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0.03.26 현재)

### 1)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해외부동산형, 단위:%) | | | |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진이 | 1982 | 팀장 | 21 개 | 6,385 억원 | -11.74 | - | -11.74 | - | *운용경력: 2년 5개월<br>(2010.02. ~ 2014.11.)<br>키움증권 주식운용팀<br>(2014.11. ~ 2017.12.)<br>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br>(2018.01. ~ 현재)<br>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채권팀 |
| 백희범 | 1970 | 팀장 | 19 개 | 14,550 억원 | -11.74 | - | -11.74 | - | *운용경력: 8년<br>(2008.12. ~ 2010.11.)<br>산은자산운용 경영전략팀<br>(2010.11. ~ 2012.03.)<br>미래에셋증권 채권랩운용팀/리테일채권팀<br>(2012.03. ~ 현재)<br>키움투자자산운용 Credit 팀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부동산(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
| | 수수료후취 |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미징구 (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r>*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 17조에서 정의된 부동산 관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투자대상 | 투자비율<br>(자산총액대비) |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
|---|---|---|
| ① 집합투자증권 | 60%이상 | -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합니다)(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
| ② 통화관련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의 10% 이하 | - 법 제5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br>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br>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br>4.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br>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br>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br>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br>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br>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 사항 |
|---|---|
|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br>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br>2.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r>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br>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9 호의 2 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

| | |
|---|---|
| | 5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br>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3.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br>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br>5.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br>6.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br>7.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5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7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br>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br>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br>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br>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br>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br>②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2 호 가목 내지 나목 및 라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③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2 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br>1.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br>2.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br>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 종목 이상일 것<br>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 |

| | |
|---|---|
| | 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br>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 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 개월간 법 시행령 제 251 조제 2 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 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주1) '2)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 전략

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기지 관련 증권과 기타 자산담보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FCP I – 모기지 인컴 포트폴리오(AB FCP I – Mortgage Income Portfolio)'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 | |
|---|---|
| 펀드명 | AB FCP I – 모기지 인컴 포트폴리오<br>(AB FCP I – Mortgage Income Portfolio) |
| ISIN 코드/<br>블룸버그 티커 | LU1021293185/ ASMS1US LX |
| 투자목적 및<br>투자전략 | – 모기지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ABS 주1)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위험 조정 토탈리턴 수익률 추구<br>– 포트폴리오는 총자산의 최소 2/3를 모기지 관련 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으로는 자산담보부증권("ABS"),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MBS") 및 부채담보부증권("CDOs")과 관련 금융파생상품 및 통화뿐만 아니라 공공금융회사 주택저당증권 및 민간금융회사 발행(non-agency)(즉, 사모)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여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증권을 포함<br>– 각 투자종목의 등급에 대한 투자제한 없지만 순자산의 50% 이상 투자등급 유지<br>– 주요 투자자산: 1) Agency MBS, 2) CRTs, 3) Non-Agency RMBS, 4) CMBS(Mezzanine), 5) 기타 ABS 등<br>주1) 자산담보부증권(ABS):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이나 부채 집합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표준화된 증권을 의미하며 증권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자산운용화(Securitization)라고 합니다. 기초(담보)자산에 따라 주택담보채권(모기지)를 기초로 발행되는 ABS 인 "MBS(주택저당증권)", 신용카드채권 및 자동차할부채권 등을 기초로 발행되는 "협의의 ABS", 회사채 및 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하는 "CDO(부채담보부증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 | AllianceBernstein (Luxembourg) S.à r.l.<br>(하위집합투자업자: AllianceBernstein L.P.) |
| 설정일 | 2014년 2월 20일 |
| 소재지 | 룩셈부르크 |
| 기준통화 | USD |
| 펀드규모 | USD 14억$ (2017.09 기준) |
| 비교지수 | 3M LIBOR (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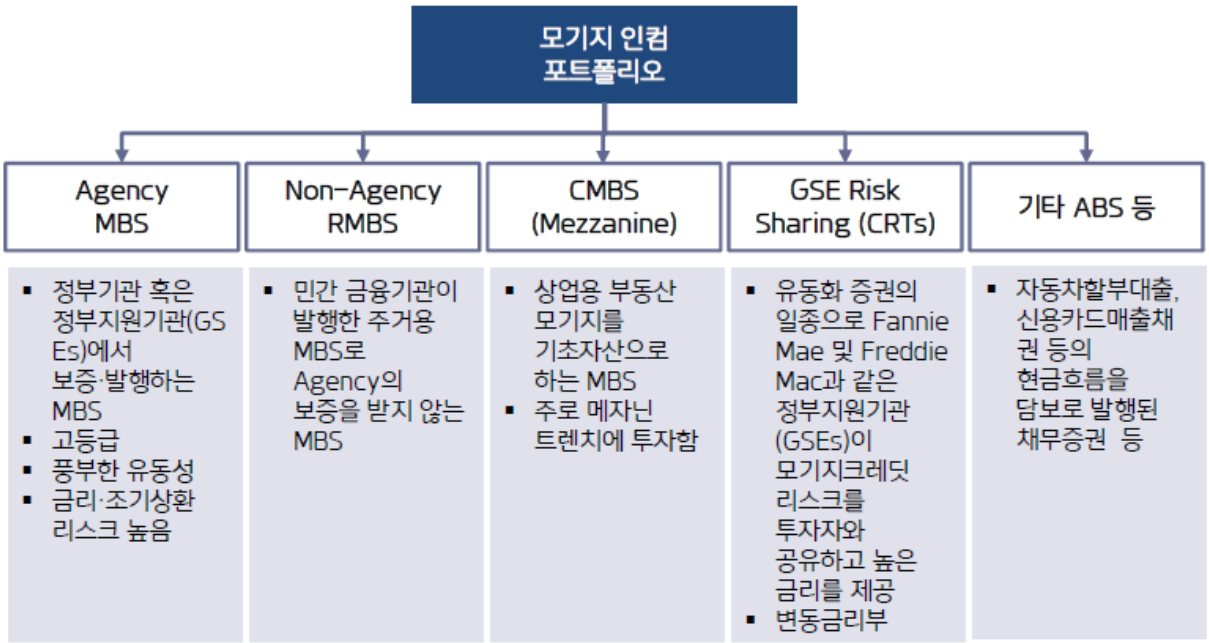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3M LIBOR (USD)' 로 정했습니다.

주1) LIBOR: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우량은행들 간의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

주2)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위험관리 전략

①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외화표시 자산 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달러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 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 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③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
| 금리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는 모기지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채권 등의 가격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에 따른 위험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헤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헤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

| | |
|---|---|
| |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에 투자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본 투자신탁에서 편입 예정인 하위 집합투자 기구는 투자 및 헤지 목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신용디폴트스왑(“CDS”), 선도거래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투자과정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관리 회사 및 관리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일부를 현금 및 현금성 상품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외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파생 상품(스왑, 선도거래, CDS 등)의 경우 장내 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장내 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집중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대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이 특정 업종이나 섹터에 집중되어 해당 업종 또는 섹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신용 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국가,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하이일드 채권 투자 위험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적격등급의 채권보다 높은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상황의 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자산가치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예상이자위험 | 본 투자신탁에서 투자 예정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 시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적은 이자를 수령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편입한 집합투자증권 및 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재간접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규약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br>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또는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 입니다.<br>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br>따라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

| | |
|---|---|
| |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변동성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달리 반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새로운 변동성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정치/제도의 위험 | 이 펀드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자금송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 제어 및 헤지목적으로 스왑, 선도, 또는 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성과 제어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가격이 계약 시 가격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투자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규나 제도에 의해 법률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 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 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

| | |
|---|---|
| |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권리와 의무 추가 발생 위험 |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해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 발생 시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권리행사 위험 |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br>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운용실무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br>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위험 및 임의 전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되거나, 합병 또는 모펀드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br>또한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키움 달러표시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USD)[채권]"(현재 기준)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 세금 관련 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br>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r>*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br>*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관련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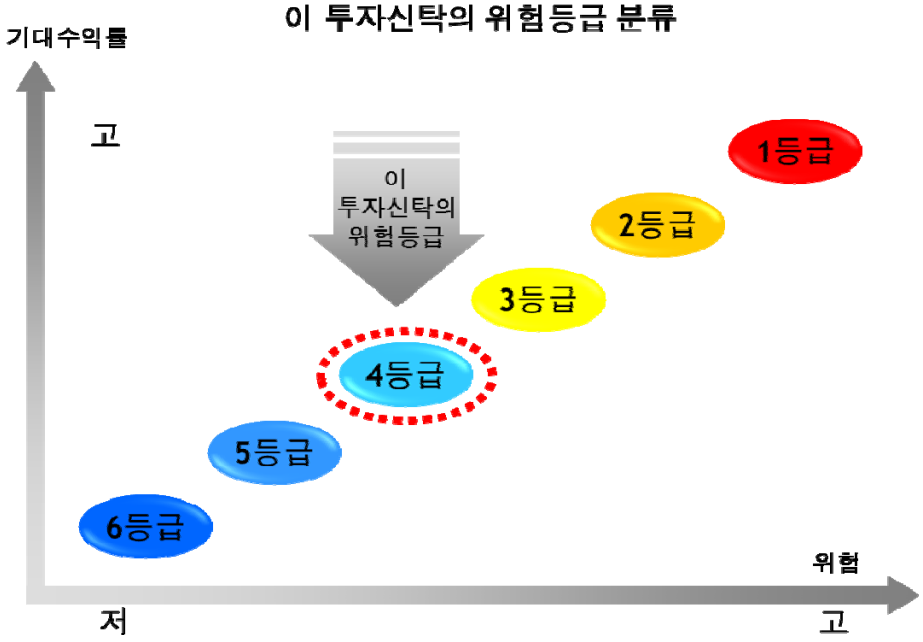


<투자위험 등급 기준>

| 구분 | 분류기준 | 집합투자기구 예시 |
|---|---|---|
| Level 1 | 매우 높은 위험 |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Level 2 |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Level 3 | 다소 높은 위험 |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Level 4 | 보통 위험 |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Level 5 | 낮은 위험 |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Level 6 | 매우 낮은 위험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

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1) 매입

####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가입제한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br>-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br>-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br>-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br>-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 수수료미징구-온라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

| | |
|---|---|
| 인슈퍼-개인연금 (S-P) |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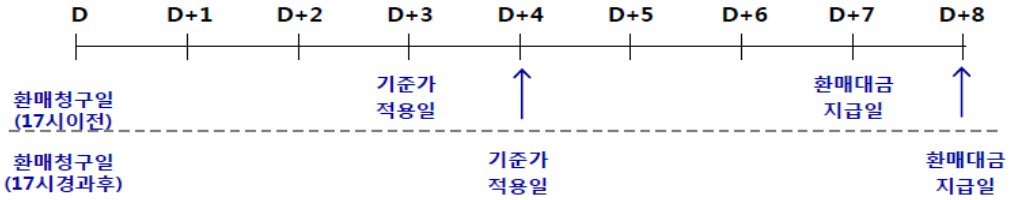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

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매청구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사.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 |

| | |
|---|---|
| | 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

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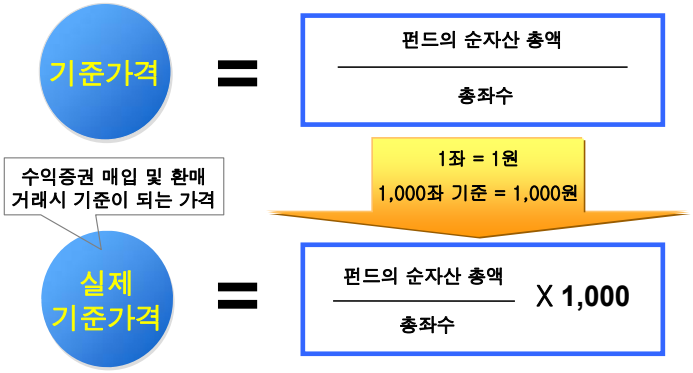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 비상장 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④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
| ⑤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 |

| | |
|---|---|
| | 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br>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⑥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br>(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⑧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 수수료율 |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35% 이내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납입금액의 0.52% 이내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 | - |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S)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클래스 | 지급비율 (연간,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증권거래비용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0.15 | 0.20 | 0.03 | 0.015 | 0.395 | 2.28 | 0.0054 | 0.4004 | 0.9704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0.15 | 0.10 | 0.03 | 0.015 | 0.295 | 1.09 | 0.0054 | 0.3004 | 0.87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15 | 0.60 | 0.03 | 0.015 | 0.795 | 1.73 | 0.0054 | 0.8004 | 1.370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15 | 0.30 | 0.03 | 0.015 | 0.495 | 1.27 | 0.0054 | 0.5004 | 1.07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0.15 | 0.03 | 0.03 | 0.015 | 0.225 | - | 0.0054 | 0.2304 | 0.80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0.15 | 0.00 | 0.03 | 0.015 | 0.195 | - | 0.0054 | 0.2004 | 0.77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15 | 0.48 | 0.03 | 0.015 | 0.675 | - | 0.0054 | 0.6804 | 1.250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15 | 0.24 | 0.03 | 0.015 | 0.435 | - | 0.0054 | 0.4404 | 1.01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 0.15 | 0.42 | 0.03 | 0.015 | 0.615 | - | 0.0054 | 0.6204 | 1.190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 0.15 | 0.21 | 0.03 | 0.015 | 0.405 | - | 0.0054 | 0.4104 | 0.9804 | - |

| |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0.15 | 0.15 | 0.03 | 0.015 | 0.345 | - | 0.0054 | 0.3504 | 0.9204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0.15 | 0.45 | 0.03 | 0.015 | 0.645 | - | 0.0054 | 0.6504 | 1.2204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0.15 | 0.10 | 0.03 | 0.015 | 0.295 | - | 0.0054 | 0.3004 | 0.8704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0.15 | 0.09 | 0.03 | 0.015 | 0.285 | - | 0.0054 | 0.2904 | 0.8604 | - |
| **지급시기** | 매3개월/사유발생시 | 매3개월/사유발생시 | 매3개월/사유발생시 | 매3개월/사유발생시 | - | - | 사유발생시 | 매3개월/사유발생시 |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6.14 ~ 2019.06.1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8.06.14 ~ 2019.06.13]

주3)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 후 1년 미만으로 비슷한 유형 투자신탁의 비용을 그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그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 클래스 (종류) | 투자기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110 | 152 | 196 | 292 | 57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68 | 272 | 381 | 615 | 1,312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5 | 96 | 129 | 199 | 40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01 | 148 | 196 | 300 | 6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81 | 316 | 552 | 1,034 | 2,46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40 | 376 | 612 | 1,096 | 2,5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51 | 104 | 160 | 280 | 638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10 | 225 | 346 | 606 | 1,38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23 | 47 | 73 | 127 | 29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82 | 168 | 259 | 453 | 1,03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20 | 41 | 63 | 110 | 25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79 | 162 | 249 | 436 | 993 |
| 수수료미징구-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9 | 142 | 218 | 382 | 870 |

| | | | | | | |
|---|---|---|---|---|---|---|
| 오프라인-<br>개인연금(C-P)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28 | 263 | 404 | 708 | 1,612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br>개인연금(C-Pe)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45 | 91 | 141 | 246 | 561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04 | 212 | 326 | 572 | 1,303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퇴직연금<br>(C-P2(퇴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3 | 129 | 199 | 348 | 793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22 | 250 | 385 | 674 | 1,535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퇴직연금<br>(C-P2e(퇴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42 | 85 | 131 | 229 | 52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00 | 206 | 317 | 555 | 1,264 |
| 수수료선취-<br>오프라인-<br>무권유저비용(AG)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35 | 72 | 111 | 195 | 445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94 | 193 | 297 | 521 | 1,187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br>무권유저비용(CG)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66 | 136 | 208 | 365 | 832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125 | 256 | 394 | 691 | 1,573 |
| 수수료후취-<br>온라인슈퍼(S)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30 | 62 | 95 | 167 | 380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89 | 183 | 281 | 493 | 1,122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개인연금(S-P) |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 29 | 60 | 92 | 161 | 367 |
| |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 88 | 181 | 278 | 487 | 1,109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7%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3)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3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3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2%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52%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5) 종류별(A, C)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

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 C-Pe, S-P 수익증권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납입금액]<br>-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br>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br>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br>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br>[세액공제]<br>-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 | |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 천재지변<br>•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br>•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br>•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br>•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
| 해지가산세 | 없음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3.3.1전 가입자 |
|---|---|
| 해지가산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
| | [면제사유]<br>• 천재지변<br>•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br>•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br>•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주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
| 대상자 | 세법상 거주자 |
| 가입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br>(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가입한도 |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
| 세제혜택 |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0.4%) |
| 세제혜택방법 |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감면세액 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br>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br>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br>가. 천재지변<br>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br>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br>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 |
|---|---|
| |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여 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2 기 (2019.06.14 ~ 2019.12.13)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 제1기 (2018.06.14 ~ 2019.06.13)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2 기 (2019.12.13) | 제1기 (2019.06.13) | 제0기 (0000.00.00) |
| 운용자산 | 10,612,278,949 | 10,459,085,057 | 0 |
| 증권 | 10,180,023,767 | 10,479,376,798 | 0 |
| 파생상품 | 75,432,406 | -121,244,41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356,822,776 | 100,952,669 | 0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116,307 | 89,519 | 0 |
| 자산총계 | 10,612,395,256 | 10,459,174,576 | 0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276,752 | 69,600 | 0 |
| 부채총계 | 276,752 | 69,600 | 0 |
| 원본 | 10,058,355,959 | 10,113,640,567 | 0 |
| 수익조정금 | -4,795,636 | 33,191,033 | 0 |
| 이익잉여금 | 558,558,181 | 312,273,376 | 0 |
| 자본총계 | 10,612,118,504 | 10,459,104,976 | 0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 2 기 (2019.06.14 ~ 2019.12.13) | 제1기 (2018.06.14 ~ 2019.06.13) | 제0기 (0000.00.00 ~ 0000.00.00) |
| 운용수익 | 1,008,134,172 | 312,881,009 | 0 |
| 이자수익 | 1,047,546 | 3,340,078 | 0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1,007,086,626 | 309,540,931 | 0 |
| 기타수익 | 1,248 | 21,574 | 0 |
| 운용비용 | -157,738 | -56,378 | 0 |
| 관련회사 보수 | 0 | 0 | 0 |
| 매매수수료 | -157,738 | -56,378 | 0 |
| 기타비용 | -288,142 | -572,829 | 0 |

| | | | |
|---|---|---|---|
| 당기순이익 | 1,007,689,540 | 312,273,376 | 0 |
| 매매회전율 | 0.00 | 0.00 | 0.00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0)%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 과 목 | 제2기(2019.12.13) | | 제1기(2019.06.13) | | 제0기(0000.00.00)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356,822,776 | | 100,952,669 | | 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56,822,776 | | 100,952,669 | | 0 | |
| 2. 예치금 | 0 | | 0 | | 0 | |
| 3. 증거금 | 0 | | 0 | | 0 | |
| **대출채권** | | 0 | | 0 | | 0 |
| 1. 콜론 | 0 | | 0 | | 0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0 | | 0 | | 0 | |
| 3. 매입어음 | 0 | | 0 | | 0 | |
| 4. 대출금 | 0 | | 0 | | 0 | |
| **유가증권** | | 10,180,023,767 | | 10,479,376,795 | | 0 |
| 1. 지분증권 | 0 | | 0 | | 0 | |
| 2. 채무증권 | 0 | | 0 | | 0 | |
| 3. 수익증권 | 10,180,023,767 | | 10,479,376,795 | | 0 | |
| 4. 기타유가증권 | 0 | | 0 | | 0 | |
| **파생상품** | | 76,432,406 | | -121,244,410 | | 0 |
| 1. 파생상품 | 76,432,406 | | -121,244,410 | | 0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0 | | 0 | | 0 |
| 1. 건물 | 0 | | 0 | | 0 | |
| 2. 토지 | 0 | | 0 | | 0 | |
| 3. 동산물 | 0 | | 0 | | 0 | |
| 4. 축산물 | 0 | | 0 | | 0 | |
| **기타운용자산** | | 0 | | 0 | | 0 |
| 1. 임차권 | 0 | | 0 | | 0 | |
| 2. 전세권 | 0 | | 0 | | 0 | |
| **기 타 자 산** | | 116,307 | | 89,619 | | 0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0 | | 0 | | 0 | |
| 2. 정산미수금 | 0 | | 0 | | 0 | |
| 3. 미수이자 | 116,307 | | 89,619 | | 0 | |
| 4. 미수배당금 | 0 | | 0 | | 0 | |
| 5. 기타미수입금 | 0 | | 0 | | 0 | |
| 6. 기타자산 | 0 | | 0 | | 0 | |
| 7.수익증권청약금 | 0 | | 0 | | 0 | |
| **자 산 총 계** | | 10,612,395,256 | | 10,459,174,676 | | 0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0 | | 0 | | 0 |
| 1. 파생상품 | 0 | | 0 | | 0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0 | | 0 | | 0 | |
| 3. 기타운용부채 | 0 | | 0 | | 0 | |
| **기 타 부 채** | | 276,752 | | 69,600 | | 0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0 | | 0 | | 0 | |
| 2. 정산미지급금 | 0 | | 0 | | 0 | |
| 3. 해지미지급금 | 211,622 | | 0 | | 0 | |
| 4. 수수료미지급금 | 65,130 | | 69,600 | | 0 | |
| 5. 미지급이익분배금 | 0 | | 0 | | 0 | |
| 6. 기타미지급금 | 0 | | 0 | | 0 | |
| **부 채 총 계** | | 276,752 | | 69,600 | | 0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10,058,355,959 | | 10,113,640,667 | | 0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4,795,638 | | 33,191,033 | | 0 | |
| 3. 이월잉여금 | 558,558,181 | | 312,273,376 | | 0 | |
| (발행좌수 당기: -449,131,359 좌 | 이익잉여금 | 558,558,181 | | 312,273,376 | | 0 |
| 전기: 0 좌 | 수익조정금 | | | | | |
| 전전기: 0 좌) | | | | | | |
| (기준가격 당기: 10,058,355,959.00 원 | | | | | | |
| 전기: 10,113,640,667.00 원 | | | | | | |
| 전전기: 0.00 원) | | | | | | |
| **자 본 총 계** | | 10,612,118,504 | | 10,459,104,976 | | 0 |
| **부채와 자본총계** | | 10,612,395,256 | | 10,459,174,676 | | 0 |

##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 과 목 | 제2기(2019.06.14 ~ 2019.12.13) 금 액 | | 제1기(2018.06.14 ~ 2019.06.13) 금 액 | | 제0기(0000.00.00 ~ 0000.00.00) 금 액 |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1,048,794 | | 3,361,652 | | 0 |
| 1. 이 자 수 익 | 1,047,546 | | 3,340,078 | | 0 | |
| 2. 배당금수익 | 0 | | 0 | | 0 | |
| 3. 수수료수익 | 0 | | 0 | | 0 | |
| 4. 기타투자수익 | 1,248 | | 21,574 | | 0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1,282,289,026 | | 984,730,701 | | 0 |
|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 0 | | 0 | | 0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0 | | 0 | | 0 | |
|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 638,225,173 | | 381,364,243 | | 0 | |
|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0 | | 0 | | 0 | |
|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188,271,406 | | 23,710,980 | | 0 | |
| 6. 외환거래/평가차익 | 455,792,447 | | 579,655,478 | | 0 | |
| 7. 기타차익 | 0 | | 0 | | 0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275,202,400 | | 675,189,770 | | 0 |
|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0 | | 0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0 | | 0 | |
|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 0 | | 0 | | 0 | |
|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 0 | | 0 | | 0 | |
|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267,322,400 | | 663,743,180 | | 0 | |
| 6. 외환거래/평가차손 | 7,880,000 | | 11,446,590 | | 0 | |
| 7. 기타차손 | 0 | | 0 | | 0 | |
| 운 용 비 용 | | 445,880 | | 629,207 | | 0 |
| 1. 운용수수료 | 0 | | 0 | | 0 | |
| 2. 판매수수료 | 0 | | 0 | | 0 | |
| 3. 수탁수수료 | 0 | | 0 | | 0 | |
| 4. 사무수탁수수료 | 0 | | 0 | | 0 | |
| 5. 지급수수료 | 445,880 | | 557,161 | | 0 | |
| 6. 기타비용 | 0 | | 72,046 | | 0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1,007,689,540 | | 312,273,376 | | 0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2,243641019 | |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101 | 105 | 0 | 0 | 1 | 1 | 101 | 106 |
| 2018.06.14 ~ 2019.06.13 | 0 | 0 | 102 | 103 | 1 | 1 | 101 | 105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6.14 ~ 2019.06.13 | 0 | 0 | 0 | 0 | 0 | 0 | 0 | 0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A-e)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6.14 ~ 2019.06.13 | 0 | 0 | 0 | 0 | 0 | 0 | 0 | 0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100 | 102 | 0 | 0 | 0 | 0 | 100 | 103 |
| 2018.06.14 ~ 2019.06.13 | 0 | 0 | 100 | 100 | 0 | 0 | 100 | 102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6.14 ~ 2019.06.13 | 0 | 0 | 0 | 0 | 0 | 0 | 0 | 0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2 | 2 | 0 | 0 | 0 | 0 | 2 | 2 |
| 2018.06.14 ~ 2019.06.13 | 0 | 0 | 2 | 2 | 0 | 0 | 2 | 2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6.14 ~ 2019.06.13 | 0 | 0 | 0 | 0 | 0 | 0 | 0 | 0 |

● 키움글로벌모기지인컴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9.06.14 ~ 2019.12.13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6.14 ~ 2019.06.13 | 0 | 0 | 0 | 0 | 0 | 0 | 0 | 0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 설정일 | 최근 1 년<br>2019.03.27~<br>2020.03.26 | 최근 2 년<br>2018.03.27~<br>2020.03.26 | 최근 3 년<br>2017.03.27~<br>2020.03.26 | 최근 5 년<br>2015.03.27~<br>2020.03.26 | 설정일 이후<br>2018.06.14~<br>2020.03.26 |
|---|---|---|---|---|---|---|
| 운용(모) | 2018.06.14 | -11.74 | | | | -5.71 |
| 비교지수 | | 1.53 | | | | 0.85 |
| 수익률 변동성 | | 11.13 | | | | 8.45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8.06.14 | -12.40 | | | | -6.41 |
| 비교지수 | | 1.53 | | | | 0.85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8.06.14 | -12.23 | | | | -6.23 |
| 비교지수 | | 1.53 | | | | 0.8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18.06.19 | -12.93 | | | | -7.02 |
| 비교지수 | | 1.53 | | | | 0.8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8.06.19 | -12.49 | | | | -6.55 |
| 비교지수 | | 1.53 | | | | 0.8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2018.06.19 | -12.08 | | | | -6.12 |
| 비교지수 | | 1.53 | | | | 0.8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8.08.14 | -12.23 | | | | -7.33 |
| 비교지수 | | 1.53 | | | | 0.9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8.07.18 | -12.21 | | | | -6.67 |
| 비교지수 | | 1.53 | | | | 0.90 |

주1) 비교지수: 3M LIBOR (USD)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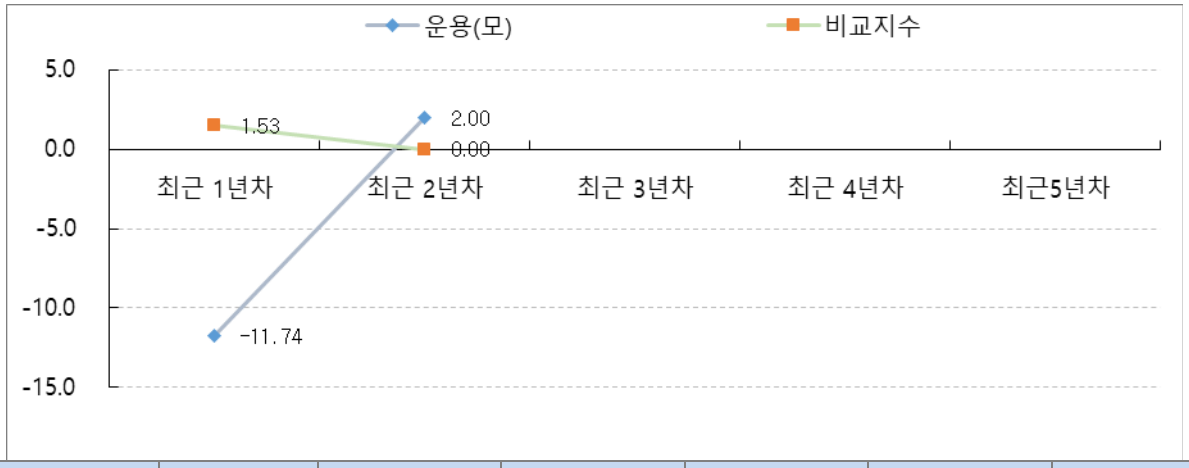


| 기간 | 설정일 | 최근 1 년차 | 최근 2 년차 | 최근 3 년차 | 최근 4 년차 | 최근 5 년차 |
|---|---|---|---|---|---|---|
| | | 2019.03.27~ 2020.03.26 | 2018.03.27~ 2019.03.26 | 2017.03.27~ 2018.03.26 | 2016.03.27~ 2017.03.26 | 2015.03.27~ 2016.03.26 |
| 운용(모) | 2018.06.14 | -11.74 | 2.00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18.06.14 | -12.40 | 1.41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18.06.14 | -12.23 | 1.57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18.06.19 | -12.93 | 0.94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18.06.19 | -12.49 | 1.33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2018.06.19 | -12.08 | 1.70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2018.08.14 | -12.23 | 1.00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2018.07.18 | -12.21 | 1.33 | | | |
| 비교지수 | | 1.53 | 0.00 | | | |

주1) 비교지수: 3M LIBOR (USD)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운용(모):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40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A: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40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A-e: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40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24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e: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24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F: 최근 2년차 수익률은 9.24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S: 최근 2년차 수익률은 6.97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S-P: 최근 2년차 수익률은 8.28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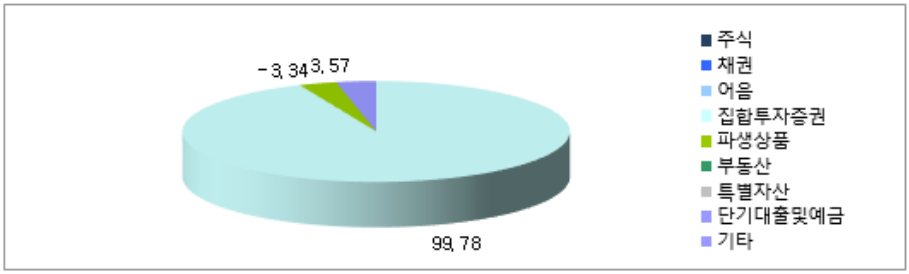


[ 2020.03.13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합계 | 0.0 | 0.0 | 0.0 | 105.5 | 0.0 | -3.5 | 0.0 | 0.0 | 0.0 | 3.8 | 0.0 | 105.8 |
| | (0.00) | (0.00) | (0.00) | (99.78) | (0.00) | -(3.34) | (0.00) | (0.00) | (0.00) | (3.57) | (0.00) | (100.00) |
| KRW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3.8 | 0.0 | 3.8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100.00) |
| USD | 0.0 | 0.0 | 0.0 | 105.5 | 0.0 | -3.5 | 0.0 | 0.0 | 0.0 | 0.0 | 0.0 | 102.0 |
| | (0.00) | (0.00) | (0.00) | (103.47) | (0.00) | -(3.47)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2020.03.13 현재 / 단위 : 억원,% ]

| 선물구분 | 평가액 | 보유비율 |
|---|---|---|
| 통화선도 | 102.6 | 100.0% |
| 합계 | 102.6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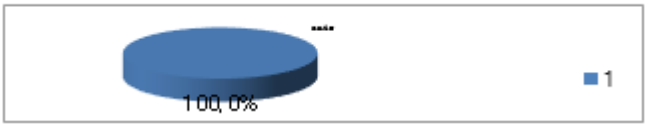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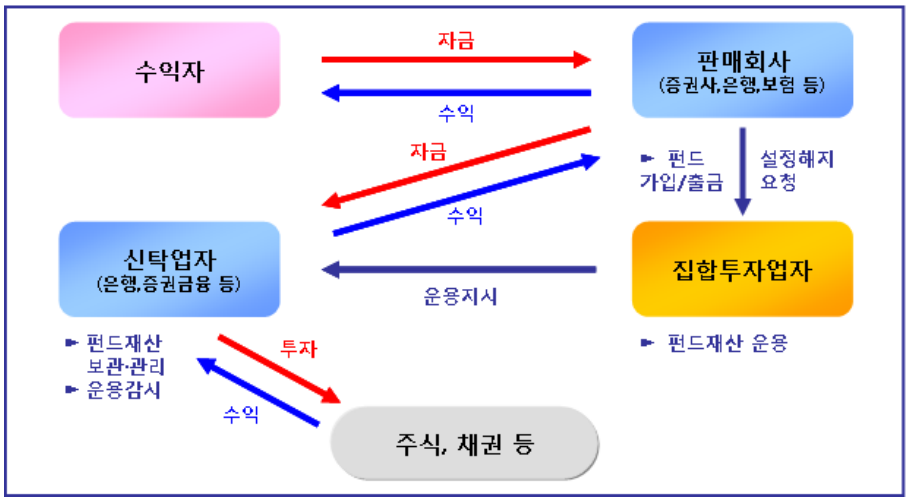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1)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br>(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
| 회사연혁 |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br>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br>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br>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br>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br>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br>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br>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br>자본금 491억<br>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br>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br>Credit Suisse사와 합작<br>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br>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br>(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
| 자본금 | 410억원 |
| 주요주주현황 | 키움증권 |

### 2) 주요 업무

####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 재무상태표 | | | 포괄손익계산서 | | |
|---|---|---|---|---|---|
| 구분 | 제32(당)기 2019.12.31현재 | 제31(전)기 2018.12.31현재 | 구분 | 제32(당)기 2019.01.01 ~ 2019.12.31 | 제31(전)기 2018.01.01 ~ 2018.12.31 |
| 현금및예치금 | 76 | 41 | 영업수익 | 610 | 527 |
| 증권 | 1,330 | 1,253 | 영업비용 | 377 | 339 |
| 파생상품자산 | 1 | - | **영업이익** | **233** | **187** |
| 대출채권 | 29 | 21 | 영업외수익 | 3 | 5 |
| 유형자산 | 14 | 18 | 영업외비용 | 10 | 1 |
| 사용권자산 | 63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226** | **191** |
| 기타자산 | 133 | 127 | 법인세비용 | 52 | 37 |
| **자산총계** | **1,646** | **1,460** | **당기순이익** | **174** | **154** |
| 예수부채 | 3 | 2 | 기타포괄손익 | 4 | 2 |
| 리스부채 | 58 | - | **총포괄손익** | **178** | **156** |
| 기타부채 | 97 | 94 | | | |
| 파생상품 | - | 4 | | | |
| **부채총계** | **158** | **100** | | | |
| 자본금 | 410 | 410 | | | |
| 자본잉여금 | 173 | 173 | | | |
| 이익잉여금 | 904 | 780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 | -3 | | | |
| **자본총계** | **1,488** | **1,360** | | | |
| **부채및자본총계** | **1,646** | **1,460** | | | |

**4) 운용자산규모**

[ 2020.03.26 현재 / 단위 : 억원 ]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 단기금융 | 총 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 | | | |
| 수탁고 | 20,134 | 76,815 | 4,002 | 32,059 | 15,035 | 35,426 | 37,573 | 1,550 | 92,586 | 315,180 |

##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국민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br>(연락처: (02)2073-7114) |
| 홈페이지 | www.kbstar.com |

### 2) 주요 업무

####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우리펀드서비스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br>(연락처: (02) 3151-3500) |
| 홈페이지 | www.woorifs.com |

### 2) 주요 업무

####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
|---|---|
| 한국자산평가 | -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br>- 연락처: (02) 399-3350<br>- 홈페이지: www.koreaap.com |
| NICE피앤아이 |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br>- 연락처: (02) 398-3900<br>- 홈페이지: www.nicepni.com |
| KIS채권평가 |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br>- 연락처: (02) 3215-1400<br>- 홈페이지: www.bond.co.kr |
| 에프엔자산평가 | -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br>- 연락처: (02) 721-5300<br>-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

### 2) 주요 업무

####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수익자 총회 등

####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 간의 거래내역입니다.

###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구분 | 선정 기준 | |
|---|---|---|
| 증권 | 주식 및 인덱스 |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
| | 채권 |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
| 장내파생상품 | 증권의 거래와 유사 | |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고유재산 투자

| 구 분 | 상 세 |
|---|---|
| 투자주체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투자목적 | –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br>–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 도모 |
| 투자시기 | – 2018.06.15 |
| 투자금액 | – 2억원 |
| 투자기간 | – 2018.06.15 ~ 2020.12.31 |
| 투자금 회수계획 | –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 단, 회수시점에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br>– 투자금 환매시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 |

주1)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풀이

| 용 어 | 내 용 |
|---|---|
| 신탁업자 |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주된 투자대상 자산 |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
| 개방형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